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4. 10(화) / 총 1매
담당 부서	민간임대정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백승호, 사무관 박송이 • ☎ (044) 201-4476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시세 95%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니” 보도 관련


- “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7월 17일 시행 예정으로, 보도에서 예시된 사업지구의 수익률은 공공성장화가 적용되기 이전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수익률입니다.
-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,
 -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청년·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%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등 기본적인 공공성을 적용할 예정이며,
 -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가적으로 확대* 해나갈 계획입니다.

* 특별공급 비율(20% 이상), 임대료 추가인하(시세의 70%), 장기임대유도(8년 이상)

<보도내용 (4.10, 경향신문)>

◆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,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다.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
- 임대료도 시세의 95% 수준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0% 이하로 책정하는 세계적 수준에 미달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44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